

업무협력 협약서

(사)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사)한국실내환경협회는 당사자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며 학교 환경보건위생관리 사업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업무상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협력내용)

본 협약서에 의한 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공공기관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업
 - ① 학교 및 공공기관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등 법령에 근거한 각종 용역
 - ② 학교 및 공공기관 기타 시설물의 관리자 교육
 - ③ 석면관련 법령에 근거한 기타사업 등(예: 점검, 해체 및 철거, 납품)
2. 학교 및 공공기관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업
 - ① 학교 및 공공기관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보건위생사업
 - ② 학교 및 공공기관 기타 시설물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③ 학교 및 공공기관 기타 시설물의 대하여 실내환경질 개선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및 용역
 - ④ 학교 및 공공기관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3.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기타의 사업 등
4. 제2조 1항 및 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은 적극 협력한다.
5. 양 기관은 제2조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

제 3 조 (분쟁 해결)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4 조 (의무사항)

- 1) 양 기관은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2)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 5 조 (기밀 유지)

양 기관은 업무 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 6 조 (이익의 상호배분)

양 기관은 업무 협력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에 관해서는 시장의 관례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건별로 정한다.

제 7 조 (제반 업무 연락)

본 협약과 관련된 제반 업무 연락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편 및 우편 그리고 팩스로 전달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제 8 조 (협약의 해지)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양 기관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9 조 (협약의 유효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서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양 기관은 협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에 서면으로 협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다. 협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본 협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양사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 11 조 (기타사항)

본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

상기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6 월 2일

(사)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한국실내환경협회

회 장 박 재 련

회 장 정 상 기

서 명



서 명

